

# 장외파생상품 거래 담당자 지정 통지서

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회사(이하 “당사”)와 하나은행(이하 “귀행”) 간에 년 월 일에 체결한 계약에  
의하여 당사에서 귀행과 개별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할 권한을 아래에 명시한 직원에게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쳐 위임하였습니다. 본 통지에 의하여  
당사와 귀행간의 개별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아래에 지정된 직원과 체결한 거래에 한하여 유효함을 확인합니다.

성명	소속부서 및 직급	생년월일	인감(서명)	권한의 제한	전화번호 & 팩스번호	비고

<sup>1</sup> 해당직원에게 위임한 권한에 특정유형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제한되어 있거나 해지 등 거래목적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위임한 권한에 제한이 있는 경우 관련 제한 사실을 모두 기재하였습니다.

[별첨] 법인 인감증명서

상기 지정은 귀행에게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유효하며,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귀행에 통지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법인명:

대표이사:

(법인감)

법인등록번호:

